

광주고등법원 2023. 5. 17 선고 2020나23232(본소), 2020나2324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손해배상(기)]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3. 5. 17 선고 2020나23232(본소), 2020나23249(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6가합61179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박철환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23. 3. 29.

판결 선고 2023. 5. 17.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6가합61179(본소), 2019가합519(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선정자 D은 134,956,597원, 선정자 E은 89,055,523원, 선정자 G는 68,265,664원, 피고(반소원고 겸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하고, 피고 B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B는 9,785,2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원고와, 선정자 C 사이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 선정자 E 사이의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보험계약, 선정자 F 사이의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보험계약, 피고 B 사이의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보험계약은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2) 나. 반소

원고는 피고들3)에게 각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2쪽 하1행부터 4쪽 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4쪽 6행부터 8쪽 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2 내지 별지5의 각 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2 내지 별지5의 각 표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4쪽 하1행 다음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별지2	선정자 D	20,880,000원	114,076,597원	134,956,597원
별지3	선정자 E	19,760,000원	69,295,523원	89,055,523원
별지4	선정자 G	8,500,000원	59,765,664원	68,265,664원
별지5	피고 B	4,201,111원	5,584,090원	9,785,201원

』

○ 제1심판결 5쪽 2행(표 제외)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3행(표 제외)의 "별지4"를 "별지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2행부터 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7쪽 11행의 "의료비 116,155,202원"을 "의료비 114,076,597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3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2018. 7.경 선정자 E, D, G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전남나주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전남나주경찰서장은 2022. 12. 3.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까지 이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 선정자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을 제23호증).

○ 원고는 당심에서 선정자 G, E의 일부 입원치료 진료기록에 대하여 추가감정을 신청하였다. 당심의 J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위 선정자들의 자의적 입원 여부나 적정입원일수를 확인하기 어렵다거나, 일부 병증에 대하여는 수술적 치료나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된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배치된다.』

3. 원고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한 해지권에 기하여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불필요한 과잉 입원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편취·수령한 보험금의 액수가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H과 사이에서 체결한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보험계약 제외)을 해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위 '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 등이 불필요한 과잉 입원을 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선정자 D, E, G,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별지1 목록 제1 내지 3, 5, 6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창한

판사김준영

판사고준홍

별지

감축하는 한편, 선정자 C, F에 대한 각 청구는 취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선정자 E에 대하여 구하는 부당이득금을 '89,055,527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 경과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89,055,523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본다.

2)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와 선정자 C, E, F 및 피고 B 사이에 체결한 각 보험계약의 해지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3) 선정자 C, D, E, F, G가 반소에서도 반소원고 B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

4) 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선정자 D, G,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한편,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